

[별표 3] <개정 2003.2.28>

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(제15조의8관련)

시설 및 용지구분	감면기준	관 계 법 령	비 고
1. 중요산업시설		초지법 제23조제4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3제1항	
①군수산업시설·기간산업시설	100분의 50면제		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함
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(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)	전액면제		
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	전액면제	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제1항제5호	
2.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		초지법 제23조제4항제2호 및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제2항	○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한함
①국방·군사시설	전액면제		
②공공청사	전액면제		
③도로·하천·철도	전액면제		

④공항·항만시설	100분의 50		
⑤농지개량시설	면제		
⑥국토보존시설	전액면제		
⑦다목적댐시설	전액면제		
및 그 수물대상지			
⑧학교시설			
· 초등학교시설	100분의 60		
	면제		
· 기타 학교시설	100분의 50		
	면제		
⑨청소년전용시설	100분의 50		
및 체육시설	면제		
⑩폐기물처리시설·	전액면제		
분뇨처리시설 및			
축산폐수공동처리			
시설			
⑪관광시설	100분의 50		
	면제		
⑫기타 공용·공공	100분의 50		
용의 경우	면제		
			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 초지전용허가를 한 것 으로서 농림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
3. 농업·축산업·임업 및 수산업 용지		초지법 제23조제4항제 3호	
①초지를 조성한	전액면제		
자(상속인을 포함			
한다)가 전용하고			
자 하는 경우			
②타인이 조성한	전액면제		
초지로서 초지조			
성 완료후 5년 이			
상 경과한 초지를			
전용하고자 하는			
경우			
③기타의 경우	100분의 50		
	면제		

